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74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이춘석·안호영·윤종군

윤준병・김윤덕・조 국

정준호 · 안태준 · 이원택

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고령화,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교통정책 패러다임도 인프라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고 등의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음. 그런데도로 건설을 포함하여 교통정책 전반이 이러한 중대한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 관련 최상위법정계획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이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도로가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9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제3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		
립) ①・② (생 략)	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③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9의2.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		
	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